

국외출장 보고서

김 정 연 부연구위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및 주요 내용

○ 목적

○ 런던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등 영국 내 선거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함

○ 국외 유관기관 방문, 영국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의 범위와 선거운동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 및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 있어 활용도 높은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원 및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영국의 선거운동의 개념과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영국의 주요 선거범죄의 유형 및 최근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의 주요 이슈를 조사
- 영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영국 내 선거운동 관련 법제에 대한 역사 및 현

황을 조사

- 2018년 런던 킹스턴 자치구 베벌리워드 구의원으로 선출된 하재성 의원과 인터뷰
 - 직접 영국의 선거운동을 경험한 분으로부터 영국 선거운동의 실제 및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소회 및 영국 일반 국민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 영국 선거운동의 규제의 주안점과 우리나라 선거운동과의 차이점 등에 관해 인터뷰
- 런던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최근 영국 내 선거운동 규제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거부정방지 및 선거운동규제 관련 법률개정안 등을 조사

2. 기간

2018년 11월 12일 ~ 18일 (5박 7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1) 대상국가(도시)

- 런던, 영국 (2018년 11월 12일 ~ 13일)
- 에든버러, 영국 (2018년 11월 14일 ~ 17일)

2) 방문기관

-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
- 영국 국회(UK Parliament)
- 런던 킹스턴자치구 베벌리워드 하재성 구의원 사무실
- 런던 선거관리위원회

4. 세부일정

일 자	주요내용	비고
11월 12일 (월)	인천 공항 출발 →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항공기 이동 (18시간 소요)

일 자	주요내용	비고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 도착	
11월 13일 (화)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 (The Electoral Commission) 방문	City Chambers, High Street, Edinburgh EH1 1YJ
11월 14일 (수)	스코틀랜드 → 런던	기차 이동 (약 5시간 소요)
	영국 국회의사당 방문	Westminster, London SW1A 0PW
11월 15일 (목)	런던 킹스턴(London Kingston) 자치구 베벌리워드(Beverley ward) 구의원 Jaesung Ha 의원과의 인터뷰	Unit 5, Wyvern Industrial Estate, Beverley Way, New Malden, Surrey, KT3 4PH
11월 16일 (금)	런던 선거관리위원회 (Main Office of The Electoral Commission) 방문	3 Bunhill Row, London, EC1Y 8YZ
11월 17일 (토)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항공기 이동 (10시간 50분)
11월 18일 (일)	인천 공항 도착	

II. 출장내용

1.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1) 개요

- o 일자 : 2018년 11월 13일(화)
- o 장소 : City Chambers, High Street, Edinburgh EH1 1YJ
- o 참여전문가 : Sarah Mackie, Senior Officer of Communications

2) 면담내용

o 영국에서의 선거운동의 개념: 영국의 선거법령은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운동 또는 선거 경비를 규율하는 규정들에서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국민대표법 제90A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2편에서 “어느 선거의 입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이란 그가 그 선거에서 입후보자 된 후에 그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된 비용 또는 누군가에 의해 제공된 물건,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대가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항도 ‘선거경비’를 정의하면서 “등록된 정당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이란 선거의 목적으로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영국에서 선거운동이란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당선 또는 정당의 승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o 영국에서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사례

-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선거법령의 일부 규정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제b호는 “제4항의 ‘선거의 목적으로’와 관련하여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도 제4항의 선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민대표법 제110조 제1항은 합리적으로 볼 때 선거에서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이루거나 당선가능성을 높일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홍보물을 선거홍보물로 본다. 나아가 동조 제14항은 어느 홍보물이 제1항의 선거홍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홍보물에 후보자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 선거운동 여부 관련 사례, Lutfur Rahman 사건 : 런던 자치구 타워 햄리츠의 구청장 Lutfur Rahman은 2014년 5월 22일에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월 ‘Canary Wharf Group plc’란 회사에 자신의 구청장으로서의 3년간의 재임을 기념하여 약 600명의 시민들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정기적으로 여러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왔던 동 회사는 회사의 경비로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약 600명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Lutfur Rahman의 3년 재임을 축하하면서 그의 업적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에는 초청된 시민들에게 머그 등 정치적 홍보가 들어 있는 선물도 제공하였다. 이 행사의 비용은 4만 파운드가 넘었고, 런던 자치구 타워 햄리츠의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참여하였다. 결국 2014년 5월 22일 선거에서 Lutfur Rahman은 재선되었고 이후 선거법원에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선거쟁송이 제기되었는데 선거법원은 무료로 제공된 저녁식사 등이 Lutfur Rahman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용되는 등 국민대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향응 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당해 행사는 선거일 4개월 전에 개최되어 Lutfur Rahman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행사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이유로 그를 위해 투표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향응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향응제공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이루어진 시점이 선거일과 많이 차이가 날수록 국민대표법상 향응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o 영국 내 주요 선거범죄의 유형

- 선거범죄의 유형 : 영국은 선거법령에서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부패형(corrupt practice)』과 부패형에 비해 경한 『위법행위형(illegal practice)』으로 나뉘고 있다. 당선자가 부패형과 위법행위형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고, 부패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상실되며, 위법행위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상실된다. 부패형 선거범죄는 배심재판(1년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이나 약식재판(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위법행위형 선거범죄는 약

식재판(5등급 이하의 벌금형)으로 재판한다.

- 『부패형(corrupt practice)』 선거범죄의 종류에는 선거관련 뇌물죄(국민대표법 제113조), 향응제공(국민대표법 제114조), 부당한 영향력행사(국민대표법 제115조), 금지된 출구조사결과와 공표(국민대표법 제66조A), 선거경비지출 사후 보고서 의도적인 허위신고(국민대표법 제82조 제6항 등), 선거사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경비지출(국민대표법 제75조), 입후보등록서에 허위사실 기재 혹은 허위서명(국민대표법 제65A조), 우편선거 또는 대리선거 관련 범죄 (국민대표법 제62A조, 제62B조), 신원 도용에 의한 투표(국민대표법 제60조)가 있다.

-부패형에 비해 경한 『위법행위형(illegal practice)』 선거범죄에는 공직의무위반(국민대표법 제63조),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국민대표법 제106조), 입후보 등록 철회를 매수하거나 매수되어 입후보등록을 철회하는 행위(국민대표법 제107조),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공고문 등의 게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국민대표법 제109조), 선거홍보물에서 홍보물의 출판자 및 의뢰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국민대표법 제110조), 위법한 선거운동원 고용(국민대표법 제111조 및 국민대표법 제175조), 선거경비지출에 관한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들(국민대표법 제73조, 제76조 등; 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제137조 등)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등이 있다.

o 최근 영국 내 선거운동 규제 주요 이슈 - 디지털선거운동에 대한 대응

영국에서도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악용한 선거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7년 10월 인터넷 안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위한 첫 단추로 “인터넷 안전 전략-녹서(Internet Safety Strategy - Green Paper)”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인터넷 안전 전략 녹서에 대한 정부의 대답(Government Response to the Internet Safety Strategy Green Paper)”을 통해 인터넷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매년 인터넷 안전관련 투명성보고서(Internet Safety Transparency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 윤리 및 혁신을 위한 센터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를 설치하여 정보 사용의 안전, 윤리의식 및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스코틀랜드 시의회 참관

스코틀랜드 시의회(City Chambers) 방문

2. 영국 국회 (UK Parliament)

1) 개요

- o 일자 : 2018년 11월 14일(수)
- o 장소 : Westminster, London SW1A 0PW
- o 참여전문가 : 국회 유규영 서기관(안내)

2) 기관 방문 및 면담내용

o 선거운동 관련 법제에 대한 역사 및 현황 조사

- 영국은 17개의 법률(Act)과 약 30개에 이르는 법규명령을 통해 각종 선거를 규율하고 있다. 선거를 규율하는 법률 중 가장 주요한 법률은 『국민대표법 1983(Representaton of the People Act 1983)』, 『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2000(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2000)』 그리고 『선거관리법 2006(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이다.

『국민대표법 1983(Representaton of the People Act 1983)』은 국민대표법, 선거등록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선거관련 법규정들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률로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원 선거가 제외되어 영국 내 모든 선거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제외되는 선거의 근거 법령도 『국민대표법 1983(Representaton of the People Act 1983)』의 내용을 모범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 관련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민대표법 1983(Representaton of the People Act 1983)』은 제1편 하원의원 선거 및 지방행정부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선거권행사, 제2편 선거운동, 제3편 소송절차, 제4편 기타 지방선거에 관한 특별규정들, 제5편 일반사항 및 보칙으로 구성되고, 제2편 선거운동에서는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선거경비, 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2000(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2000)』은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정당의 등록,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의 경비사용 관련 준수사항, 정당의 선거경비 제한, 국민투표 등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다.

『선거관리법 2006(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은 전자적 선거권자의 관리, 우편선거의 개선, 피선거권자 연령 조정, 선거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 2002년 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채택한 사항들을 입법화 한 것이다.

o “VOTE 100” 전시 등 참관

2018년은 영국에서 30세 이상의 여성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1918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영국 국회에서는 올해 내내 여성참정권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1918년 국민대표법에 의해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에 이르러서야 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된 영국 여성 참정권 역사에 대한 전시 및 웨스트민스터홀 중앙에 이를 상징하는 조각 작품인 “House of Doors(by artist Kristina Clackson Bonnington)” 까지 참관하였다.

3. 런던 킹스턴자치구 베벌리워드 하재성 구의원 사무실

1) 개요

- o 일자 : 2018년 11월 15일(목)
- o 장소 : Unit 5, Wyvern Industrial Estate, Beverley Way, New Malden, Surrey, KT3 4PH
- o 참여전문가 : 하재성(Jaesung Ha)의원

2) 인터뷰 내용

o 한국의 선거운동과 영국의 선거운동을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
한국의 선거운동은 슬로건 위주의 대중선동 방식이 주류인 반면에 영국은 전통적으

로 개별방문과 인쇄물 전달이 선거운동의 주요 방식이다. 점차 SNS를 많이 사용하지만 장년층 이상은 전통방식을 선호한다. 한국의 정치 풍조는 정책이나 이념을 좌와 우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분법적인 풍조가 많은 것 같고 이로 인해 작지만 가치있는 의견이 뒤로 밀려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영국의 정치는 선거의 과정에서 작은 가치들도 존중하고 이를 모아 커다란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분이 매우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o 영국 일반 국민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

영국의 공식 선거기간은 보통 투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인데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나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다. 만일 선거가 정치행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이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지역구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치행위이다. 주차나 쓰레기 수거 문제, 재개발 문제나 학교의 교실 수 부족, 교통체증 등 각종 민원이 매일 매일 쏟아지며 이를 잘 해결하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없다. 영국인들은 평소에 지역의원에게 자신의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에서 지방선거는 과거의 정치행위에 대한 선거구민의 심판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o 영국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주안점 및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영국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주안점: 영국은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하는 모든 선거자금은 정당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거용 인쇄물의 프린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든 인쇄물을 카운트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선거 후 남은 프린트도 지역구 사무실로 반납하여 비용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얻어먹을 수 없으나 유권자를 만나 각자 비용을 계산하여 먹는 것은 무방하다.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최소한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허용하는 선거 자금이 매우 적고 관리가 엄격하므로 공천을 받기 위한 공천헌금이나 선거를 도우며 돈을 뜯어내는 정치꾼이 존재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가 선거구민 1인에게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한화로 180

원(15펜스)정도이다. A4용지 1장을 인쇄해서 가정으로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프린터 잉크값을 제외하더라도 용지 1장에 5펜스, 봉투 1장에 10펜스, 우표 1장에 60펜스 등 총 75펜스가 소요되므로 허용된 선거자금으로 한 가구에 편지 2번을 보내기도 빠듯하다. 그러나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영국의 선거운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풀어졌으면 한다. 선거구민 1인당 180원(15펜스)의 금액으로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너무 과소하다. 이 정도의 비용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우편물을 돌리기 위해 쏟는 시간과 체력이 너무 과도하기에 가구당 우편물을 최소한 3~4번 정도로 보낼 수 있도록 주민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이 지금의 약 2배 정도로 인상되었으면 좋겠다.

o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영국의 선거운동 관련 제도 및 선거운동 문화
한국은 전후 도입한 민주제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상호 교류가 좀 더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점차 풀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가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가고 유권자가 정치나 정치인이 되는 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선거자금에 대한 철저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공보물도 인터넷에 게재하고 포스터나 현수막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유권자의 인식도 이제는 충분히 높아졌기에 유권자가 정치에 쉽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4. 런던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1) 개요

o 일자 : 2018년 11월 16일(금)

o 장소 : 3 Bunhill Row, London, EC1Y 8YZ

o 참여전문가 : Craig Westwood, Director of Communications /

Katy Knock, Senior Officer of Communications / Ellen Wilkie, Officer of Communications / Niki Nixon, Head of External Communications, Head of Research and Policy

2) 면담 내용

o 최근 영국 내 선거운동 규제의 주요 사례

-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케이스 :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파문으로 대선 기간 당시 CA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2018년 3월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고발을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페이스북은 사태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CA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CA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한 후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위치정보, 친구 목록, ‘좋아요’ 버튼을 누른 콘텐츠 등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는 CA로부터 이 데이터를 넘겨받아,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광고와 캠페인 메시지를 배포하고 선거 자금 기부를 유도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영국정부는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 정보를 대거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정보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0만 파운드(약 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브렉시트 아론 뱅크스 케이스 :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론 뱅크스와 그의 회사들이 ‘리브닷EU’를 비롯한 브렉시트 지지 캠페인에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범법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6년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 그룹을 운영하는 데 썼던 자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뱅크스는 당시 ‘베터 포 더 컨트리’와 브렉시트 지지 캠페인 그룹 ‘리브닷EU’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800만 파운드(약 117억14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자금의 원천이 뱅크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범죄수사국(NCA)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자금 중 일부가 뱅크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록 홀딩스에서 전달됐는데, 이 회사가 영국령 맨섬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 현행법상 선거 및 국민투표와 관련해 해외에서 기부를 받거나 자금을 제공 받는 것은 불법이다. ‘베터 포 더 컨트리’에 제공된 자금 중 일부는 허용되지 않은 출처에서 비롯됐으며, 브렉시

트 국민투표를 전후해 뱅크스가 여러 차례 영국 주재 러시아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o 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거부정방지 및 선거운동규제관련 법률개정안

- 투표시 포토아이디(photo ID) 등을 통한 투표자의 신분확인제도 도입 :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투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신분을 사칭하여 투표하는 선거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영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시 포토아이디(photo ID),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등을 통해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올해 2018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시험적으로 5개의 지역(Bromley, Gosport, Swindon, Watford, Woking)에서 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내년 2019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11개 지역으로 확대한 후 실험의 결과를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디지털 선거운동(Digital Campaigning)관련 법률개정안 :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The Electoral Commission)는 디지털 선거운동(Digital Campaigning)의 증가에 따른 시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선거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디지털 선거운동 자료에 자료의 생성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선거운동광고를 행하는 자는 선거운동광고에서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디지털 선거운동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자 및 정당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수사활동 이외에도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영국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